■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[별지 제24호서식] <개정 2023. 6. 23.>

제 호

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서

지 정 번 호: 소방용품 전문기관 제 호

기 관 명:

대 표 자:

사업소의 소재지:

업무개시일:

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6조 및 「소방용품의 품질관리에 관한 규칙」 제33조제3항에 따라 위 기관을 소방용품에 대한 제품검사 전문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소방청장 직인

210㎜×297㎜[백상지(150g/㎡)]